

자동차 오토론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하나카드"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간의 대출 계약(이하 "오토론 약정"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오토론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하나카드는 이를 대출실행 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 (대출의 실행)

- ① 오토론 약정에 의한 대출은 하나카드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신청·지정한 대출금 지급계좌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② 하나카드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등)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카드는 대출금액에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 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제 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연체 발생시점에 대출금리가 없는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1.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 이율
 - 2.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하나카드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 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 등 채무자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하나카드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5조 (금리인하 요구권)

- ① 제4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하나카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오토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카드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1.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2.기타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하나카드가 각 50%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본 조 제1항 이외에 대출금의 완제시까지 하나카드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 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 (당월 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오토론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하나카드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9조 (결제방법)

- ① 하나카드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별도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ex 마이너스 통장), 그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담보의 제공)

하나카드는 오토론 약정서상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하나카드가 제시 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연장)

수시상환식/원금유예식 자동차 오토론에 의한 기한연장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되며, 이 경우, 연장금리, 보증인 입보 조건 등의 연장조건은 채무자의 대출금 상호내역(연체이력 포함) 및 대외 신용도 변화에 따라 최초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2조 (변경사항의 통지 의무)

- 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카드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오토론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하나카드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하나카드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 (채권의 양도)

하나카드는 오토론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해석)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하나카드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